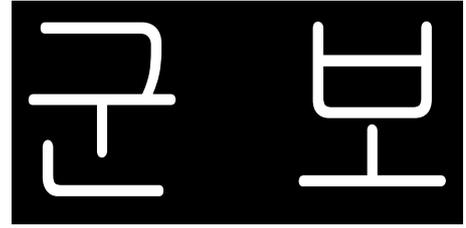


# 군 정 방 침

-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

- 소통의 향연
- 활기찬 화합행정
- 따뜻한 지역경제
- 고품격 문화관광
- 깨끗한 환경



선	기관의 장
람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965호 2015. 11. 30(월)

## ■ 고 시

-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1
-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5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7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 10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12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4
- 노화 넓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 16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 18
- 2015년 완도군 택시감차계획 고시 ..... 20

## ■ 공 고

-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 26
-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9
-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공고 ..... 57
- 지방세 체납자 압류 ..... 60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 62
-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 공고 ..... 65

회람									
----	--	--	--	--	--	--	--	--	--

발 행 : 완도군 / 편집 : 기획예산실(☎550-5051, FAX 행5029)

완            도            군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05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주정화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9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내용	<p>전라남도 고시 제2010-125호(2010.4.27) 및 완도군 고시 제2010- 22호(2010.4.27)로 변경 결정된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11.</p> <p>완 도 군 수</p>			

##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0-125호(2010.4.27) 및 완도군 고시 제2010- 22호(2010.4.27)로 변경 결정된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15.11.

### 완 도 군 수

1.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결정 조서 : 다음
2.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결정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50-56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변경없음)

(1)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없음	①	유원지	군내리 산80번지 일원	156,984	-	156,984	2010.4.27	

(2)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부지 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층수	구성 비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6,984	21,762.54	21,762.54	127,120.42	127,573.70	6	1~19	100.0		
운동 시설	골프연습장	21,059	1,055.54	1,055.54	3,989.66	4,049.63	1	4	13.4	73타석(스크린7타석) 퍼팅연습장 포함 그물망하단 : 주차장
	위터파크	40,404	13,836.78	13,836.78	43,844.63	44,622.64	1	3	25.7	실내 및 실외위터파크 동백휴양림(노천탕, 스파빌리지) 포함 지하주차장 1~3층
	소 계	61,463	14,892.32	14,892.32	47,834.29	48,672.27	2	3~4	39.1	
휴양 시설	콘도미니엄	23,368	4,516.69	4,516.69	74,156.45	74,103.38	1	19	14.9	지하주차장 1~2층
	소 계	23,368	4,516.69	4,516.69	74,156.45	74,103.38	1	19	14.9	
특수 시설	야외공연장	6,969	176.70	176.70	348.92	102.02	1	2	4.4	이벤트마당, 휴게마당, 잔디마당 포함
	전시관	8,980	1,978.23	1,978.23	4,582.16	4,532.03	1	3	5.7	
	수석공원	9,049	198.60	198.60	198.60	164.00	1	1	5.8	
	소 계	24,998	2,353.53	2,353.53	5,129.68	4,798.05	3	1~3	15.9	
관리 시설	도로	11,035	-	-	-	-	-	-	7.0	진입 : B=20m,L=268m 부진입 : B=10m,L=547m
	주차장	6,540	-	-	-	-	-	-	4.2	위터파크 지하주차장과 연결
	소 계	17,575	-	-	-	-	-	-	11.2	
조성(완충)녹지	29,580	-	-	-	-	-	-	18.9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05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주정화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9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내용	<p>1. 완도군 고시 제2014-126호로 인가고시된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p> <p>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11.</p> <p style="text-align: center;">완 도 군 수</p>			

##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완도군 고시 제2014-126호로 인가고시된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11.

# 완 도 군 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

구 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80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 종류 :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 사업 명칭 : 완도 해든 유원지 조성사업	변경 없음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56,984㎡ ◦ 토지이용계획 <span style="float: right;">(단위: m<sup>2</sup>)</span>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운동 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휴양 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수 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리 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녹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156,984</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7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4.8</td> <td style="text-align: center;">74.1</td> <td style="text-align: center;">75.6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156,984</td> <td style="text-align: center;">61,463</td> <td style="text-align: center;">23,368</td> <td style="text-align: center;">24,998</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75</td> <td style="text-align: center;">29,580</td> </tr> </tbody> </table> 변경사유 : 면적 정정	구분	계	운동 시설	휴양 시설	특수 시설	관리 시설	녹지	기정	156,984	700	270	124.8	74.1	75.65	변경	156,984	61,463	23,368	24,998	17,575	29,580	변경
구분	계	운동 시설	휴양 시설	특수 시설	관리 시설	녹지																	
기정	156,984	700	270	124.8	74.1	75.65																	
변경	156,984	61,463	23,368	24,998	17,575	29,580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이동 236-6 4층 ◦ 성명 : (주)해든D&C 신수교	변경 없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4. 11(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6. 6. 30	변경 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변경 없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완도군청 지역개발과 비치)																						
8. 인가조건	◦ 게재생략																						
9. 기타 문의	◦ 전화 061-550-5603(완도군청 지역개발과)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03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9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3일

#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 인 (신고)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공사기간 (착수 및 준공예정일)	피승인(시행)자		승인일
					주 소	성 명	
2015-33	군외면 불목리 1205-9 지선	선착장 및 접안장 증축	441.0	2015.11. 5. 2016.12.30.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수 (지역개발과)	2015.11.3.
2015-34	군외면 당인리 산106-55 지선	호안도로 확장	669.0	2015.11. 5. 2016.12.30.			
2015-35	군외면 당인리 산106-1 지선	호안도로 연장	657.0	2015.11. 5. 2016.12.30.			
2015-36	군외면 영풍리 699-6 지선	선착장 정비	285.0	2015.11. 5. 2016.12.30.			
2015-37	군외면 당인리 산116-40 지선	선착장 연장	124.0	2015.11. 5. 2016.12.30.			
2015-38	금일읍 충동리 30-2 지선	방파제 연장	572.0	2015.11. 5. 2016.12.30.			
2015-39	고금면 도남리 1532-12 지선	선착장 연장	905.0	2015.11. 5. 2016.12.30.			
2015-40	고금면 청용리 927-16 지선	선착장 연장	368.0	2015.11. 5. 2016.12.30.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인 (신고)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공사기간 (착수 및 준공예정일)	피승인(시행)자		승인일
					주 소	성 명	
2015-41	고금면 봉명리 610-7 지선	선착장 연장	325.0	2015.11. 5. 2016.12.30.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수 (지역개발과)	2015.11.3.
2015-42	고금면 봉명리 195-9 지선	선착장 연장	226.0	2015.11. 5. 2016.12.30.			
2015-43	고금면 봉명리 132-8 지선	선착장 연장	250.0	2015.11. 5. 2016.12.30.			
2015-44	신지면 신상리 13-13 지선	물양장 및 선착장 연장	685.0	2015.11. 5. 2016.12.30.			
2015-45	신지면 신상리 13-14 지선	호안도로 정비	957.0	2015.11. 5. 2016.12.30.			
2015-46	신지면 월양리 1156-48 지선	선착장 연장	89.0	2015.11. 5. 2016.12.30.			
2015-47	신지면 대곡리 1270-19 지선	호안도로 정비	981.0	2015.11. 5. 2016.12.30.			
2015-48	신지면 대곡리 1270-17 지선	호안도로 정비	646.0	2015.11. 5. 2016.12.30.			
2015-49	청산면 신흥리 9-9 지선	호안도로 확장	55.0	2015.11. 5. 2016.12.30.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05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9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고시(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5일

# 완 도 군 수

○공유수면점용·사용 변경 허가내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사항 (기간)		
허가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허 가 기 간	피 허가 자		허 가 번호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010-52	고금면 덕동리 317-5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90.0	2015.10.21. 2020.10.20.	완도군 고금면	정 * 일	2015-43	2010.10.21. 2015.10.20.	2015.10.21. 2020.10.20.
2011-75	고금면 상정리 756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720.0	2015.11.10. 2020.11. 9.	완도군 고금면	신 * 숙	2015-44	2011.7.20. 2016.7.19.	2015.11.10. 2020.11. 9.
2010-51	고금면 덕동리 37-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417.0	2015.10.21. 2020.10.20.	완도군 고금면	김 * 진	2015-45	2010.10.21. 2015.10.20.	2015.10.21. 2020.10.20.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05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10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5일

#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허가 번호	위 치	목 적	면 적 (㎡)	허가기간	피 허가 (승인)자		허 가 일 (점사용료)
					주 소	성 명	
2015-57	보길면 정자리 산148-8 지선	산책로 조성	676.0	2015.11.5. 2045.11.4.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수 (관광정책과)	2015. 11. 5. (면 제)
2015-58	노화읍 방서리 416-7 지선	응급의료 전용 헬기장 조성	807.0	2015.11.5. 2045.11.4.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수 (보건의료원)	2015. 11. 5. (면 제)
2015-59	보길면 부황리 43-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수관)	175.2	2015.11.5. 2020.11.4.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79	김 * 옥	2015. 11. 5. (면 제)
2015-60	고금면 봉명리 56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수관)	148.2	2015.11.5. 2020.11.4.	고금면 고금서로 76번길 79-33	김 * 근	2015. 11. 5. (면 제)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13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10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 인 (신고)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공사기간 (착수 및 준공예정일)	피승인(시행)자		승인일
					주 소	성 명	
2015-50	노화읍 방서리 416-7 지선	응급의료 전용 헬기장 조성	807.0	2015.11.15. 2016.11.14.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 도 군 수 (보건의료원장)	2015.11.13.
2015-51	고금면 봉명리 56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148.2	2015.11.15. 2016.11.14.	고금면 고금서로	김 * 근	2015.11.13.
2015-52	보길면 부항리 43-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175.5	2015.11.15. 2016.11.14.	보길면 보길로	김 * 욱	2015.11.13.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23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김두현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10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노화 읍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내용	농어촌 정비법 제10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노화 읍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노화 읍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 11. 23.

완 도 군 수



1. 사 업 명: 노화 읍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
3. 사업개요:
  - 가. 위 치 : 완도군 노화읍 읍도(내리,방축리) 일원
  - 나. 가 구 수 : 272가구(내리 167, 방축리 105)
  - 다. 사 업 량 : 주택정비,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정비, 소프트웨어등 4개부문
  - 라. 사업비전 :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지역 읍도』
4. 사 업 비: 3,104백만원(국비 2,324, 지방비 780)
5. 사업기간: 2015 ~ 2017
6. 사업시행자: 완 도 군 수
7. 관계도서배치 : 완도군청 안전건설과(☎061-550-5767) 비치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25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10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고시(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 완 도 군 수

○공유수면점용·사용 변경 허가내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사항 (기간)		
허가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허 가 기 간	피 허가자		허가 번호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004-59	완도읍 군내리 산83-3지선	조선소 선가대 시설	650.0	2015.11.16. 2020.11.15.	완도군 완도읍	강 * 훈	2015-46	2012.11.16. 2015.11.15.	2015.11.16. 2020.11.15.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30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전화용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5-10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5년 완도군 택시감차계획 고시			
내용	2015년도 완도군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금액을 확정고시 함.			

## 완도군 택시 감차계획 확정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택시 자율감차 추진계획이 완도군택시감차위원회 심의의결 되어 아래와 같이 확정 고시 합니다.

2015. 11. 30 .

## 완 도 군 수

### 1. 완도군 택시자율감차 보상가격

(단위 : 천원)

읍면별	개 인	법 인	읍면별	개 인	법 인
완도읍	3,720	3,120	약산면	2,640	2,280
금일읍	1,440	1,320	청산면	2,640	2,280
노화읍	2,280	2,040	소안면	1,440	1,320
군외면	2,640	2,280	금당면	1,440	1,320
신지면	2,640	2,280	보길면	2,280	2,040
고금면	2,640	2,280	생일면		

## 2. 제3차 택시총량제 감차규모

(단위 : 대)

읍면별	개 인	법 인	감 차 대 수	읍면별	개 인	법 인	감 차 대 수
150대	66	84	30				
완도읍	42	44	-17	약산면	3	3	-1
금일읍	6	4	-2	청산면	1	4	-1
노화읍	3	7	-2	소안면	3	2	-1
군외면	3	3	-1	금당면	1	1	0
신지면	0	7	-2	보길면	2	5	-2
고금면	2	4	-1	생일면	0	0	-

## 3. 감차대상자 선정방법

- ① 휴지차량을 우선순위로 한다.
- ② 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저가입찰을 실시한다.

## 4. 감차신청 기간

○ 2015.12.01 ~ 2015.12.10 (10일간)

## 5. 기타문의사항

○ 완도군 경제산업과 ☎ 061-550-5580

## 6. 신청서식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서식 2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차량번호	

위와 같이 2015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li> <li>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li> <li>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li> <li>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경우는 법인 회의록</li> <li>-</li> </ul> </li> </ol>	수수료 없음
------	---	-----------

( 제3호서식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감차 신청 내역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차량번호	

위와 같이 2015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 제4호서식 ]

<b>택시 감차보상 계약서</b>			
계약자	발 주 처	완 도 군 수	
	계약상대자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약내용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감차대수	대
	차량번호		
	보상금액	일금	원정( ₩ )
	사업용 차량번호판,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20 . . . . .까지 /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li> <li>·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li> </ul>	
<p>군수와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완도군수			(인)
계약상대자			(인)
첨부서류	택시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17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0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p> <p>어업권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업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안)1부. 끝.</p>			

#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년 11 월 17 일

완 도 군 수

##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내역

### □ 어업권 포기신고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품 종	포기 면적 (ha)	어장 위치	어업권자		포기 사유	포기일자
					주 소	성 명		
계	1건		20.0					
10906	해조류	미역	20.0	약산 당목	약산 당목	당 목 어촌계	재개발	2015. 11. 17. 본 승인 21번(미역 20ha)포기 해조류(미역 등) 20ha재개발

###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어업의 방 법	품 종	어장 위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주 소	성 명		
계	2건				30.0				
13848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약산 당목	20.0	약산 당목	당 목 어촌계	2015. 11. 17. 2025. 11. 16.	본 21
13849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청산 지리	10.0	청산 지리	지 리 어촌계	2015. 11. 17. 2025. 11. 16.	본 54

#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11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황용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0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내용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 다.			

##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완 도 군 수

### 1. 위탁개요

- 가. 위탁시설 :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 나. 위 치 : 완도군 신지면 신리 675-2번지의외 34필지
- 다.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수량(면적)	세부내용(용도)	비고
관리동	1동/226.65㎡	○사 무 실 : 23㎡ ○화 장 실 : 54㎡ ○샤 워 장 : 126.65㎡ ○다용도실 : 23㎡	관리동내 사무용 비품 일체 없음
캠핑카사이트	22면	○면적 : 12m×10m ○평상 : 3m× 6m ○탁자 : 1.8m×1.6m	1면당
캠핑사이트	48면	○면적 : 10m×9m ○평상 : 4m×6m,5m×7m ○탁자 : 1.8m×1.6m	1면당
취사장	58.5㎡	○음수대 12개	
물놀이체험시설	2면	○성인용, 어린이용 ○비치위장 10개	
풋살경기장	1면/1,170㎡	○인조잔디	
족구경기장	1면/364㎡	○마사토 포장	
어린이놀이터	1개소/640㎡	○종합놀이대 1식	
캠프파이어장	2개소/1,500㎡		
앰프	1식	스피커 18개	
CCTV	10개소		
조경	39종 24,909주	○캠핑장내 조경	
부지면적	26,984㎡		

라. 위탁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마. 사 용 료 : 132,000,000원(예정가격은 2년간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임)

## 2. 신청자격

가. 오토캠핑장에 카라반(숙식이 가능한 캠핑카 트레일러) 10대 이상을 가지고 와 (지입) 수탁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개인, 개인사업자.

※ 카라반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4인용 이상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라. 우리군에서 제시한 사용허가조건(I, 붙임1), 특수허가조건(II, 붙임2)을 수탁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정해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마. 낙찰되었을 때 손실예치금 납부확약서(붙임3)에 제시한 손실예치금을 정해진 기일 내 납부할 수 있는 자.

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전대시 허가 취소)

사.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한 자.

## 3. 공고기간 및 가격평가·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5. 11. 12 ~ 2015. 11. 26.

나. 공고방법 : 나라장터(<http://www.g2b.go.kr>),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 고시공고에 게재

다. 현장설명

○ 일 시 : 2015. 11. 20(화) 14:00

○ 장 소 :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오토캠핑장 內)

○ 설명방법 : 현장 설명 및 시설물관련 질의·응답

※ 현장설명 당일 참가자가 없을 시 현장설명 생략

라. 가격입찰 및 개찰

○ 입찰기간 : 2015. 11. 12 ~ 2015. 11. 26. 17: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개찰일시 : 제안서 발표시

마.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 11. 12 ~ 2015. 11. 26. 17:00까지

○ 장 소 :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시설담당(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4. 평가방법

- 가. 가격평가와 제안서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나. 가격평가는 제안서보고회시 계약담당자 입회하에 개봉하여 진행한다.
- 다.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5. 제안서 평가

##### 가. 평가개요

- 일 시 : 2015. 12. 1(화) 14:00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평가순서 : 당일 추첨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통지

##### 나.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 배점한도 점수인 50점(정성적평가 40점, 정량적평가 10점)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평가위원회 구성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

##### 라.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는 사전 담당 공무원이 평가한다.
- 위원은 제안서 검토 및 제안자의 15분이내의 설명을 청취한 후 공개 질의한다.  
※ 15분 초과시 감점은 없으나 1분이내 종료
- 각 심사위원 “평가표의 합계”를 취합하여 “평점 결과표” 서식에 의거 점수를 합산한다.
-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위원(위원장포함)의 제안서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한다.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영한다.

마. 평가 요소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점	
가격평가	입찰 가격 평가 분야 (50%)		50	※평점산식 : 아래
제안서 평 가	소계		50	업무 담당자 (자료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10%)	○근무인력 보유현황	3	
		○캠핑장 관련 수행실적	4	
		○재무구조	3	
	정 성 적 평가분야 (40%)	○위탁시설 운영 계획	5	평가위원 평가
		○위탁시설 유지관리 계획	10	
		○위탁시설 활성화 계획	10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5	
		○환경관리 계획	5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		5		

※ 입찰 가격평가 평점산식

$$\left[ \left( \frac{\text{입찰금액}}{\text{예정가격}} \times 100 \right) - 100 \right] / 2 + 40\text{점} = \text{가격평가 점수}$$

- 예정가격은 132,000천원 기준임.

- 입찰 가격평가 점수 산정결과 50점 이상은 50점까지만 인정함.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함.

- 가격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인정

바.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 제안서(50점) = 정량적평가(10점) + 정성적평가(40점)

[정량적 평가 : 10점]

○ 근무인력 보유현황 : 3점

근무인원	점 수	비 고
6인 이상	3.0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증빙서류 - 연금관리공단가입 · 건강보험 ·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중 1부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관할 세무서 신고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5인	2.5	
4인	2.0	
3인	1.5	
2인 이하	1.0	

○ 캠핑장 수행실적 : 4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비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 캠핑장 관련사업 수행실적	○4회이상	4.0	○ 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에 의해 별도 확인 절차)
	○3회	3.0	
	○2회	2.0	
	○1회	1.0	

○ 재무구조(신용도) : 3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평점		3	
	자기자본비율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	
		A.기준비율의 100%이상	(2)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1.5)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0)	
		D.기준비율의 50%미만	(0.5)	
	유동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A.기준비율의 100%이상	(1.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0.8)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0.6)	
		D.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0.4)	
		E.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0.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0.39%		
	유동비율	120.7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2년기업 경영분석」의 서비스업(E, G~S)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

(자기자본비율 : 30.39%, 유동비율 : 120.77%)에 의하여 평가

※ 미제출시 최하점수 인정

[정성적 평가 : 40점]

항목및배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40
제안서 평가	위탁시설 운영계획	○ 인력배치 및 운영 계획(지역고용 창출 등) ○ 종사자 위생 및 친절교육 실시 계획 ○ 이용객 안전관리 대책(재난·재해, 교통사고 등)	5
	위탁시설 유지관리 계 획	○ 시설별 관리 및 운영 계획 ○ 시설별 유지보수 계획 ○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재난·재해, 화재 등)	10
	위탁시설 활 성 화 계 획	○ 위탁시설 활성화 계획 ○ 현재 가능하고 연속적인 프로그램개발 운영 계획 ○ 타 시설(오토캠핑장)과 차별화 방안 ○ 이용객 편의제공 ○ 이용시설 추가 설치 계획 ○ 비수기 활성화 대책	10
	지역경제 활 성 화 연계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전략 방안 ○ 인근 마을과 연계 협력 방안 ○ 지역 상가와 연계 방안	5
	환경관리 계 획	○ 시설 환경관리 계획 ○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관리 대책 ○ 관리구역내 잡초제거 및 수목 관리계획 ○ 이용객 행락질서 유지(고성방가 금지, 주차 등)	5
	지역관광 자 원 과 연계방안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 방안 ○ 관광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사.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내용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본 위탁취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 할 경우에는 제안서 목차순서인 9번 항목 기타 사항란에 작성 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미공개 한다.

아. 제안서 작성 요령

- 작성규격은 A4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질은 백상지 제본은 상철한다.
- 제안서는 한글파일로만 작성할 수 있다.
  - 제목(HY헤드라인M, 글씨크기20), 항목(휴먼명조, 글씨크기15), 내용(휴먼명조, 글씨크기13), “영문 HCIPoppy”, “기호 한양신명조” 적용
  - 줄간격(160), 용지여백(위쪽 30, 아래쪽 20, 왼쪽 20, 오른쪽 20)
  - ※ 제안서는 가급적 상기 문서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나 필요시 변경 가능
- 제안자는 제출된 제안서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안 설명(15분 이내)시 사용할 수 있다.
- 페이지수는 표지 포함하여 6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한다.
  - ※ 표지 양식 【붙임6】 참조
- 제안서의 작성은 목차순서 【붙임7】 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는 제안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기타유의사항

- 제출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 허가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항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완도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낙찰자 결정

- 가. 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를 종합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나. 동일 점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입찰 금액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격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 다. 1인 입찰 참가시 유찰이며, 2회 이상 유찰시 참가자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라. 1순위 낙찰자가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낙찰자 결정은 가격평가 및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바. 낙찰자 발표 : 2015. 12. 2. 10:00 예정

##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미달하여 입찰한자.

나. “손실예치금 납부 확인서”를 제시한 금액 미만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한자.

다. 입찰참가 신청시 구비서류 미제출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위배한 입찰을 한자.

## 8. 사용허가 신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조건을 갖추어 위·수탁협약(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처리한다.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 9.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1년차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사용허가 신청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한다.

나.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의 1/2이며, 2년차 사용료는 나머지 1/2을 기간개시 이전 선납한다.

## 10. 기타 사항

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이전에 정정 공고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0호 '13.06.19.)」, 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계약체결기준 제반회계 관계법령을 적용함.

마. 낙찰자로 확정된 후 제반허가 등록을 득하면서 별도의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용한다.

## 11. 제출 서류

### 가. 입찰자 의무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1부.(서식1, 서식2)
-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위임장(서식3, 4) 각1부
-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I) 1부. (붙임1)
-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II) 1부. (붙임2)
- 손실예치금 납부확약서 1부. (붙임3)
- 서약서 1부. (붙임4)
- 법인(단체)현황(법인, 단체만 해당) 1부. (붙임5)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만 해당)사본 1부.
- 제안서 11부, USB 1개(붙임6, 7)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후 도장 날인) 1부.

### 나. 기타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 12. 문의안내

가.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군 관광정책과 관광시설담당(061-550-5420)으로 문의

붙임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위임장 1부.

붙임1)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I) 1부.

붙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II) 1부.

붙임3) 손실예치금 납부확약서 1부.

붙임4) 서약서 각 1부.

붙임5) 법인(단체)현황(법인, 단체만 해당) 1부.

붙임6) 표지양식 1부.

붙임7) 제안서작성 목차순서 1부

(서식 1)

(접수번호: )

<b>입찰참가신청서</b>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개요	사업공고(지명)번호	제 호	참가일자	
	참가사업명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 본인은 계약 체결 시 귀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p>본인은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p> <p>붙임서류 1. 인감신고서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p> <p style="text-align: right;">2015. . .</p> <p style="text-align: right;">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10px;"><b>완도군수 귀하</b></p>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입찰참가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15 -	접수일자	2015. .
업체명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접수자	소속 : 관광정책과 (인)		
<b>완도군수</b>			



(서식 3)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_\_\_\_\_는(은) 완도군청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_\_\_\_\_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



【붙임1】

## 공유 재산 사용허가 조건 ( I )

본 공유재산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 일(계약일)부터 2017년 12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하며, 완도군과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위·수탁 협약일부터 2015년 11월 일까지는 사전 운영 준비기간으로 한다.)

### 제3조(계약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건을 갖추어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귀속한다.

### 제4조(사 용 료)

1. 1년차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낙찰금액의 1/2이며, 2년차 사용료는 나머지 1/2을 기간개시 이전 선납한다.
2. 군에서 위탁관련 시설을 추가로 설치 완료한 때에는 별도로 위탁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1. 연간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2년차 사용료 납부는 기간개시 전 선납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 요구 등은 불가하며, 동 내용을 사유로 우리 군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본 조건 제12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14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위탁자는 필요에 의해 소규모시설 및 비품(인테리어 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완도군수의 승인 후에 설치하되, 사용허가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정상영업 이전에 완도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소 보험금 수령액은 건물의 재산 평정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 수탁자는 정상영업 이전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15억원으로 하고 대물보상은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로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허가 중 분실 또는 훼손시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한다.
3. 수탁자는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요할 때에는 설비내용(설계도면 및 설비목록)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수탁자는 허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을 지며, 부담 비용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료, 통신요금, 난방비, 가스비, 분뇨처리비, 상·하수 유지비용, TV수신료 등)과 기타 유지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건당 3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전기,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소모품, 주변 환경 미화 등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단, 3백만원 이상의 보수·수선 일지라도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3. "군"은 건물외부 도장과 "군"의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 등 사업적 성격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2. 관리태만,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7. 허가 받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8.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군"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휴업을 7일 이상 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10.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1. "군"의 승인 또는 특별한 이유없이 시설물 일부를 폐쇄하거나 정상운영 하지 아니한 때
12. 지시사항 3회 고지 후 불 이행 시 허가는 자동 취소
13.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용료를 임의로 인상하여 부과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 - 별첨)
14.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수탁자가 원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 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위탁자는 제15조 중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손실예치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5일전부터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인계 준비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3일전까지 상호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수탁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9조(법규준수 및 책임)

1. 수탁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포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제반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2. 카라반 등 모든 시설 사용료 징수는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용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인상을 하여서는 안 된다.(최초 사용료 별첨)
3. 수탁자는 관광객들에게 숙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완도군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수탁 시설물이나 비품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형대로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손실이나, 분실 할 때에는 원상조치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수탁받은 구역 내 환경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구역 내 잡초로 인해 경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6.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 사용시설(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에는 필수 비품은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7. 인계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자재·물품은 완도군의 소유이므로 수탁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손상시켰을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8.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인허가(영업허가 등)를 받아야하며, 인허가의 가부는 완도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본 허가재산과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하여는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2015 .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성명(법인·단체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완도군수 귀하

(별첨)

완도군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 기준	성 수 기		비 수 기		비 고
			주 공 휴 일	평 일	주 공 휴 일	평 일	
캠핑카	4인용	1대/1일	130,000	110,000	100,000	80,000	
	6인용	1대/1일	160,000	140,000	130,000	110,000	
캠핑싸이드	4m*6m	1면/1일	30,000	30,000	30,000	28,000	
	5m*7m	1면/1일	33,000	33,000	33,000	30,000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 카라반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0원, 4시간까지 4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캠핑장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5,000원, 2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 요금 변동은 2개월전 승인요청 및 그 밖의 사항 - 군 승인의 절차에 의함
- ※ 완도군민등 요금 할인은 계약체결시 협의에 의함

【붙임2】

##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Ⅱ)

본 공유재산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조(수탁자와 종사자의 자격)

1. 수탁자는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
2. 수탁자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 허가(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
3. 종사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4.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5. 수탁자나 종사자가 사용허가재산 사용 도중 범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남은 사용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손실예치금의 사용)** 손실예치금은 위탁기간 만료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다만, 아래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중 잔여분만 상환한다.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과금 등) 미납에 따른 충당금
2. 사용재산의 시설 훼손, 도난 등 복구 명령 불이행시 충당금
3. 위탁기간 만료 시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 불이행시 철거비용 충당금

### 제3조(운영계획서 및 운영상황 제출)

1. 매분기(1·4·7·10월) 5일전까지 다음 분기 운영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2. 매월 운영상황(예약 및 이용객 현황, 금액 등)은 익월5일까지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생 점검)

1. 각 시설별 위생상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시설물과 주변에 발생된 쓰레기는 수탁자가 직접 처리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1. 시설물에 사용할 침구류와 식기류는 상품 이상으로 하여 고급화하고, 2년마다 혹은 수시로 교환한다.
2. 숙박객 퇴실 후에 사용 침구류는 반드시 세탁하여야 하며, 새로운 숙박객들에게는 사용한 침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전기시설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4. 위생·환경 등 각종 점검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5. 완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건축(시설)물과 비품 사용 시 훼손이나 망실 시에는 수탁자(원인자)가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7. 관리 시설물은 최소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소모품은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초작업, 가지치기, 정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오토캠핑장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예약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0. 수탁자는 성공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캠핑카 5대는 위·수탁 협약일 30일 이내, 나머지 5대는 협약일 90일내에 설치한다.(4인용 70%이상)
11. 캠핑장내 설치된 CCTV는 이용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CCTV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 및 대책)

1. 수탁자는 이용자들에게 전기사용법(화재예방), 시설물 사용법, 주차방법 등의 상황을 입실 전에 주의시키고 안내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 내 전기 및 주방시설에 대해서는 숙박객들에게 이용수칙을 충분히 설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이용객들에게 지정된 위치에 주차를 하도록 안내하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와 차주가 진다.
4. 수탁자는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 행동메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기상

특보 발령 시에는 행동매뉴얼에 따라 인명피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재난대비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수탁자가 모두 책임진다.

2015. .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성명(법인·단체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완도군수 귀하

【붙임3】

## 손실예치금 납부 협약서

손 실 예 치 금 납 부 금 액	
금	(₩ )

※ 유의 사항

1. 손실예치금 : ₩ 원

- 손실예치금은 입찰금액의 25% 예)입찰액 132,000,000원×0.25= 33,000,000원

2. 낙찰자가 납부 가능한 금액란에 손실예치금을 자필로 쓰고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확인 바랍니다.

3. 이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인은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때 손실예치금으로 위에 자필 작성한 금 원 (₩ )을 사용료와 동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협약합니다.

2015. . .

성명 (대표자) : (인)

주민번호(법인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완도군수 귀하

【붙임4】

# 서 약 서

제안자 주 소 :  
성 명 :

1. 완도군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위·수탁운영 제안서에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까.
2. 그리고, 완도군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평가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결정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또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제안 사항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I,II)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행하지 않을시 허가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 . .

제 안 자 (인)

완도군수 귀하

【붙임5】

## 신청자 법인(단체) 현황

일반 현황

- 명 칭 :
- 대 표 자 :
- 주 소 :
- 설 립 일 자 :
- 설립근거 및 목적  
( 정 관 내 용 ) :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취임일자	연 락 처

연혁

연 월 일	연 혁

주요사업내용

기구표(조직도)

※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붙임6】

· 표지양식 ※ A4 종으로 작성

문  
음

접수번호 :

접 수 일 :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 제안서  
(HY헤드라인M, 글씨크기 20, 진하게)**

**신청인(법인, 단체 명)  
(HY헤드라인M, 글씨크기 18)**

## 완도군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 제안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위탁시설 운영 전략
3. 위탁시설 운영 계획
  - 인력운영 계획 (지역고용 창출 등)
  - 종사자 위생 및 친절교육 실시 계획
  - 관광객 안전관리 대책 (재난·재해, 교통사고 등)
4. 위탁시설 유지관리 계획
  - 시설별 관리 및 운영 계획
  - 시설별 유지보수 계획
  -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재난·재해, 화재 등)
5. 위탁시설 활성화 계획
  - 위탁시설 활성화 계획
  - 현재 가능하고 연속적인 프로그램개발 운영계획
  - 타 시설(오토캠핑장)과 차별화 방안
  - 이용객 편의제공
  - 이용시설 추가 설치계획
  - 비수기 활성화 대책
6.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전략 방안
  - 인근 마을과 연계 협력 방안
  - 지역 상가와 연계 방안
7. 환경관리 계획
  - 시설 환경관리 계획
  -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관리 대책
  - 관리 구역 내 잡초제거 및 수목 관리 계획
  - 이용객 행락질서 유지(고성방가 금지, 주차 등)
8.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
  - 관광시설과 연계 방안
  - 관광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9. 기타 사항

※ (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한다.



#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24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1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지분)인가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권(지분)인가 공고 1부. 끝.</p>			

##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등록 공고

수산업법 제19조, 동법 제16조 및 어업등록령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이전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 【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품종	어장 위치	면적 (ha)	이전 하는자			이전 받는자			이전 사유
						주소	성명	면적 (ha)	주소	성명	면적 (ha)	
제2284호	마을 어업	규칙 제11조 에 의함	패류, 해조류 정착성 수산동 식물	고금 장항	20.0	금일로 274번 길 14	완도금일 수협장	20.0	고금면 고금 서로 460	장 항 어촌계	20.0	어촌계 설립에 의한 이전

2015년 11월 24일

완 도 군 수

##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증

이전 하는자	① 성 명	완도금일수협장	②생 년 월 일	1959. 02. 07
	③ 주 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274번길 14		
이전을 받는자	④ 성 명	장항 어촌계	⑤생 년 월 일	1969. 03. 16
	⑥ 주 소	완도군 고금면 고금서로 460(장항리)		
⑦ 허 가 번 호	제 2015 - 001호	⑧ 이전받는 지분	20.0 ha	
⑨ 어업의종류	마을어업	⑩ 양 식 방 법	규칙 제 11조에 의함	
⑪ 면 허 번 호	제2284호	⑫포획,채취,양식 물	패류, 해조류 정착성 수산동식물	
이전의 사유	어촌계 설립에의한 어업권 이전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함.

2015 년 11 월 24 일

완      도      군      수

#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20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박국종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1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			
내용	별첨내용과 같음			

#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15. 11. 20. ~ 2015. 12. 4.(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완도군청 세무외계과 징수담당(☎ 061-550-5251)

##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납세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체납액	등기번호	공시송달사유	압류사유
1	정경*	60090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56*.*	3,120,610	1502101311154	수취인부재	지방세체납
2	김경*	45031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8, 101동 70*(삼호그린빌)	1,371,250	1502101311155	폐문부재	지방세체납

2015년 11월 20일

# 완 도 군 수

#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25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1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1부. 끝.</p>			

완도군공고 제 2015 - 518호

##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공고

수산업법 제14조 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완 도 군 수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내역(신지)

허가 번호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품종	면적 (ha)	면허기간		어장 위치	어업권자	
						당초	연장		주소	성명
계	1건				6.0					
2015- 80	12516	복합 양식	연승수하식	미역, 다시마	6.0	07.12.10 15.12.29	15.12.30 25.12.29	신지 동촌	신지 동촌	동촌 어촌계
			이	하	여	백				

#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5-11-26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51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하였기 고시 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 공고(안)1부. 끝.</p>			

**완도군공고 제 2015 - 519호**

#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년 11 월 26 일**

**완 도 군 수**

## 어업권포기 수리 내역

### □ 어업권 포기신고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품종	포기 면적 (ha)	어장 위치	어업권자		포기 일자	포기 사유
					주소	성명		
계	1건		10.0					
13281	패류	전복 등	10.0	약산 화가	약산 화가	화 가 어촌계	2015.11.26	행사 계약 미 이행